

연금저축계좌(집합투자증권) 설정약관 변경대비표

1. 대상 약관 : 연금저축계좌(집합투자증권) 설정약관
2. 시행 예정일 : 2024년 1월 1일
3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약관 적용 여부 : 적용
4. 주요 변경내용 :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 (소득세법 14조 개정 사항 반영)
5. 변경대비표

변경 전	변경 후	비 고
<p>제 1 조~제 14 조 <생략></p> <p>제 15 조(회사의 원천징수) ① 가입자가 연금수령 및 연금외수령의 방법으로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. 다만, 인출되는 금액이 과세제외금액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1. 연금수령하는 금액은 연금소득으로 아래 표와 같이 가입자의 나이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며 세액계산은 「소득세법」 제 64 조의 4 각 호의 세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. 다만, 제 12 조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연금소득 또는 연금소득 합계액(제 12 조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연금소득은 제외)이 <u>연 1 천 200 만원</u>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납세의무(제 3 항의 지방소득세 포함)가 종결된다.</p>	<p>제 1 조~제 14 조 <좌동></p> <p>제 15 조(회사의 원천징수) ① 가입자가 연금수령 및 연금외수령의 방법으로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. 다만, 인출되는 금액이 과세제외금액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1. 연금수령하는 금액은 연금소득으로 아래 표와 같이 가입자의 나이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며 세액계산은 「소득세법」 제 64 조의 4 각 호의 세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. 다만, 제 12 조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연금소득 또는 연금소득 합계액(제 12 조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연금소득은 제외)이 연 1 천 500 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납세의무(제 3 항의 지방소득세 포함)가 종결된다.</p>	<p>소득세법 14조 개정 연간사적연금 금액변경 1,200만원 ->1,500만원</p>

<p>② <생략></p> <p>제 16 조 ~ 제 28 조 <생략></p>	<p>② <좌동></p> <p>제 16 조 ~ 제 28 조 <좌동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부칙<개정 2024. 1. 1.></u></p> <p><u>제 1 조(시행일) 이 약관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</u></p>	<p>약관변경시 공시, 통지 의무 확대 (금감원 요청)</p>
---	---	--